

# 조세에 대한 법규 각 新문서와 일부 중요정책업의 데이트

2018년 10월 - 2호



# 콘텐츠

이런 문서중에,우리 Grant Thornton Việt Nam주는 최근 일부 새로운 법규문서와 조세에 대한 중요 정책 안내들을 고객님에게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1.



봉급에 대한 일부 규정변경, 보충의 의령서 제121/2018/NĐ-CP호.

2.



투자우대진행 안내에 대한 통지 제83/2016/TT-BTC호의 변경보충 해준 통지서 제81/2018/TT-BTC호.

3.



중간 결재 서비스에 대한 외국 계약자의 세금.

4.



제출기업은 고정자산 청산할때 (개별)홀로 송장을 구입해야 한다.

5.



서비스를 진행하기위한 지원금을 받을때 VAT10% 공제를 해야한다.

6.



수출생산위한 사용목적 바꿈후의 생산원료 재사용은 환세를 받을수없다.

7.



귀국한후 외국인근로자의 개인소득세의 환세.

JAN

02

03

APR

05

06

JUL

08

09

OCT

11

12

# 1. 봉급에 대한 일부 규정 변경 ,보충의 의령서 제121/2018/ND-CP호.

2018/09/13 일에 정부는 의령서 제121/2018/ND-CP호 (“의령121”)를 발급해서 2013/ 05/14일에 의령 제49/2013/ND-CP호의 봉급에 대한 노동법의 일부 조항 집행 규정을 변경보충해준다. 상기 의령의 발효는 2018/11/01일부터이다.

의령121호엔 노동기준수준의 작성과 국가 노동관리기관에 보내준 급여단, 급여표, 노동 수준의 제출 절차의 면제 대상을 명백히 밝혀준 규정들을 보충한다. 구체로, 노동 기준 수준을 만드는 원칙은 그에 근거해서 상품기준에 따른 근로자에게 봉급지급을 해 준다. 그외에 행정절차 감소목적으로 본 의령은 근로자 10명이하의 기업에 대한 급여단, 급여 표, 노동수준의 제출 절차를 국가관리 기관에 보내준 면제를 허가해준다.



## 2. 투자우대진행 안내에 대한 통지 제83/2016/TT-BTC호의 변경보충 해준 통지서 제81/2018/TT-BTC호.

재정부는 통지서 제81/2018/TT-BTC호를 발급해서 투자법의 일부조항 집행안내의 2015/ 11/12일에 의령118/2015/NĐ-CP호 와 투자우대진행 안내에 대한 2016/06/17일에 통지 제 83/ 2016/TT-BTC호들을 변경보충 해준다. 새 의령서는 2018/10/12일에 발효한다.



통지서는 투자우대진행 안내에 대한 규정을 한다. 그에 따라, 통지서 81에는 2015/ 7/1일 전부터 국가 실권기관의 발급된 투자허가서, 투자증인서 혹은 동등법적가치 증서들의 보유 및 2015/7/1일 전부터 투자규모 150억동이하 국내투자 제안이 2014투자 법의 규정 과 집행안내 문서들에 따른 투자우대 보류의 보장된 대상에 속하는 제안; 즉 그런 제안들은 법인소득세, 수입세, 비농업토지사용세들이 새로 발표된 문서 혹은, 2015/ 7/1일 전부터 법적 문서에 따라 수혜되고 단, 더 유익된 문서중의 하나로 적용을 한다.

### 3. 중간 결제 서비스에 대한 외국 공사계약자의 세금.

2018/09/07일에 세총국은 중간 결제(전자지갑) 을 통한 각 결제거래에 대한 외국 계약 자의 세금을 안내해준 문서 3428/TCT-CS를 발표한다. 구체로, 본 문서는 세금을 다음 2경우의 처리를 안내한다. (i) 상품공급계약에 따른 중간결제서비스, 베트남판매측과 베트남 구매측사이의 서비스; (ii) 상품공급계약에 따른 중간결제 서비스, 외국판매측과 베트남 구매측사이의 서비스 포함. 그에 따라 거래참가 각 측에 대한 외국공사계약자의 세금의무는 다음처럼 안내된다:



#### 외국 중간결재의 경우

- (i)경우: 외국 중간결재의 거래 처리비는 베트남에 공사계약자의 세금을 부담한다. 베트남공급자는 외국에 결재중간에 지급해준때 외국공사계약자의 세금공제를 부담한다.
- (ii)경우: 외국 상품공급자는 외국에 결재중간에 거래처리비를 지급할때 베트남공사 계약자의 세금적용대상에 속하지 않다.



#### 외국 상품공급자와 베트남구매측사이 상품, 서비스 매매 계약인 경우

상품, 서비스를 공급하는 측이 직접납세된 대상인 외국계약자의 경우라면 베트남 상품, 서비스구매측이 베트남 결재중간을 통한 외국측에 상품, 서비스금액을 지급해 주기전에 공사계약자 세금 (있으면), 세금신고, 납세, 공제를 외국측 대신으로 한다. 세무기관도 베트남 결재중간(전자지갑)측이 세무기관의 요구가 있을때 외국측의 공사계약자 세금의 수금진행시 같이 협력하고 서류공급을 책임지는 요구를 한다.





#### 4. 제철기업은 고정자산 청산할때 [개별]송장을 구입해야 한다.

Hà Nội세국은 최근에 문서 54475/CT-TTHT의 2018/08/03일에 발표로 고정자산을 청산판매한 제철기업인경우에 대한 VAT정책을 안내한다. 문서에 따라 사용했던 고정자산을 국내시장에 청산판매한 제철기업인 경우, 기업이 수입세 납세했고, 세관기관과 사용목적 바꾸고 국내소화한 형식의 수입 VAT도 납세했으면 기업은 세관과 연락해서 통지서 제 39/2014/TT-BTC호에 따른 상품판매, 서비스공급에 대한 개별송장을 구매한다. 기업은 개별송장 1장을 공급되어 고정자산 청산판매시에 국내기업에 제출해 준다. 고정자산 청산활동에 대한 납세해야한 VAT금액은 고정자산 청산의 개별 송장의 금액이 목적바권시에 수입한때의 납세된 VAT금을 배내준 분으로 정한다.



## 5. 서비스를 진행하기위한 지원금을 받을때 VAT10% 공제를 해야한다.

세총국은 최근에 문서41662/CT-TTHT호의 2018/06/19일에 발표로 보험회사부터 받은 금액 항목에 대한 VAT을 안내한다. 그에 따라, 세총국은 회사가 보험대리점으로 돈으로 지원금을 받아 예; 수리, 보증서비스, 판촉, 광고를 진행하기 위한 보험회사부터 초기 지원금, 매년 매출성과 포상금, 분기별 영업격려 포상금등을 받으면 대리점이 VAT송장 발급, 규정대로 VAT10%세율로 신고납세를 해야한다.

거구로, 초기지원금, 매년 매출성과 포상금, 분기별 영업 격려 포상금등을 받지만 보험 회사에게 상기의 서비스공급을 해준 조건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 그런 금액이 VAT 신고, 납세 면제된 대상으로 속한다. 대리점회사가 상품에 관련된 각 비용, 판매관련비용으로 지급해준 매년 판촉,판매의 지원금 항목인 경우에 받을때 대리점이 VAT10% 송장을 작성해 야한다.

## 6. 수출생산위한 사용목적 바뀜후의 생산원료 재사용은 환세를 받을수없다.

세관총국의 수출입세국은 최근에 문서 제 5269/TXNK-CST호의 2018/09/11일로 수출 생산원료에 대한 수입세 환납에 대한 안내를 한다. 그에 따라, 수출입세국은 수출상품이 품질미달으로 수리의 재수입하지만 수리불가해서 사용목적을 바뀐 절차를 했고 납세를 충분한 경우에 대한 안내를 한다. 그후에 기업은 그상품의 일부 해체된 원료를 재사용 해서 수출상품생산에 사용하면 그런 재사용 원료가 수출입 세법과 의령서 제 134/2016/ ND-CP호에 따른 환세를 받을수있는 경우에 속하지않다.

## 7. 귀국한후 외국인근로자의 개인소득세의 환세.

세총국은 문서 제2848/TCT-TNCN호의 2018/07/20일에 과잉 납세금이 있는 귀국된 외국 근로자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환납을 안내한다. 그에 따라, 외국전문가가 베트남에 와 일한후 귀국했으며 개인소득세의 과잉납세발생이 있고 세무기관과 환세 요구가 있으면 본인은 다른 조직에 위임해서 세금 결재, 환세와 그조직의 구정에 개인 소득세의 화세금액을 받을수 있다. 이런 경우엔 조직한테 위임장이 외국 근로자의 작성 과 당국 영사의 합법화를 해서 베트남 증인및 사용할수 있게한다.

동시에, 환세절차 진행과정에 위임된 조직이 세관리기관에 외국인의 개인소득세를 받은 환납 금액을 결재해준 각서를 제출해준다. 환세금을 받은후 위임된 조직이 상기의 위임장처럼 외국근로자에게 그런 금액 항목을 충분히 전달해준 책임이 있어야한다.



# Contact

본 소식통은 오직 참고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고객님께서 조세, 외국인의 활동, 생산 영업 과정에 발생한 문제점들에 대한 자문을 더 필요하시면

우리 Grant Thornton 의 전문가들과하고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객님은상기소식통을 **DOWNLOAD**

을하고싶면우리의다음web에들어오셔서

검색해주시면된다 [Tax Hub](#)

## Head Office in Hanoi

18th Floor, Hoa Binh International Office Building  
106 Hoang Quoc Viet Street, Cau Giay District, Hanoi, Vietnam  
T + 84 24 3850 1686  
F + 84 24 3850 1688

### Hoang Khoi

Tax Partner  
National Head of Tax  
D +84 24 3850 1618  
E [khoi.hoang@vn.gt.com](mailto:khoi.hoang@vn.gt.com)

### Nguyen Dinh Du

Tax Partner  
D +84 24 3850 1620  
E [du.nguyen@vn.gt.com](mailto:du.nguyen@vn.gt.com)

### 大形 薫 (Kaoru Okata)

Director – Japanese Desk  
D +84 24 3850 1680  
E [kaoru.okata@vn.gt.com](mailto:kaoru.okata@vn.gt.com)

### 満重 弘 (Hiroshi Mitsushige)

Manager – Japanese Desk  
D +84 24 3850 1689  
E [hiroshi.mitsushige@vn.gt.com](mailto:hiroshi.mitsushige@vn.gt.com)

## Ho Chi Minh City Office

14th Floor, Pearl Plaza  
561A Dien Bien Phu Street, Binh Thanh District, Ho Chi Minh City, Vietnam  
T + 84 28 3910 9100  
F + 84 28 3910 9101

### Nguyen Hung Du

Tax Partner  
D +84 28 3910 9231  
E [hungdu.nguyen@vn.gt.com](mailto:hungdu.nguyen@vn.gt.com)

### Valerie – Teo Liang Tuan

Tax Director  
D +84 28 3910 9235  
E [valerie.teo@vn.gt.com](mailto:valerie.teo@vn.gt.com)

### Tran Nguyen Mong Van

Tax Director  
D +84 28 3910 9233  
E [mongvan.tran@vn.gt.com](mailto:mongvan.tran@vn.gt.com)

### 唐牛 理任 (Masato Karoji)

Director – Japanese Desk  
D +84 28 3910 9135  
E [masato.karoji@vn.gt.com](mailto:masato.karoji@vn.gt.com)

### Nguyen Thu Phuong

Tax Director  
D +84 28 3910 9237  
E [thuphuong.nguyen@vn.gt.com](mailto:thuphuong.nguyen@vn.gt.com)

